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526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:최혜영·김병주·장철민

홍성국 · 오영환 · 이용우

임오경 · 김남국 · 신현영

정청래 · 장경태 · 주철현

임호선 · 이수진 · 이원택

김민철 · 한준호 의원
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 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 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37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7조제1항 중 "감안"를 "고려"로 한다. 제55조제2항 중 "감안"를 "고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)	제37조(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)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	①
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	
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	
담능력 등을 <u>감안</u> 하여 여성장	고려
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	
·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(이	
하 "산후조리도우미"라 한다)를	
지원할 수 있다.	
② ~ ③ (생 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
제55조(활동지원급여의 지원) ①	제55조(활동지원급여의 지원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	②
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	
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	
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	
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<u>감안</u> 하	고려-
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	
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.	